

화 성 어 천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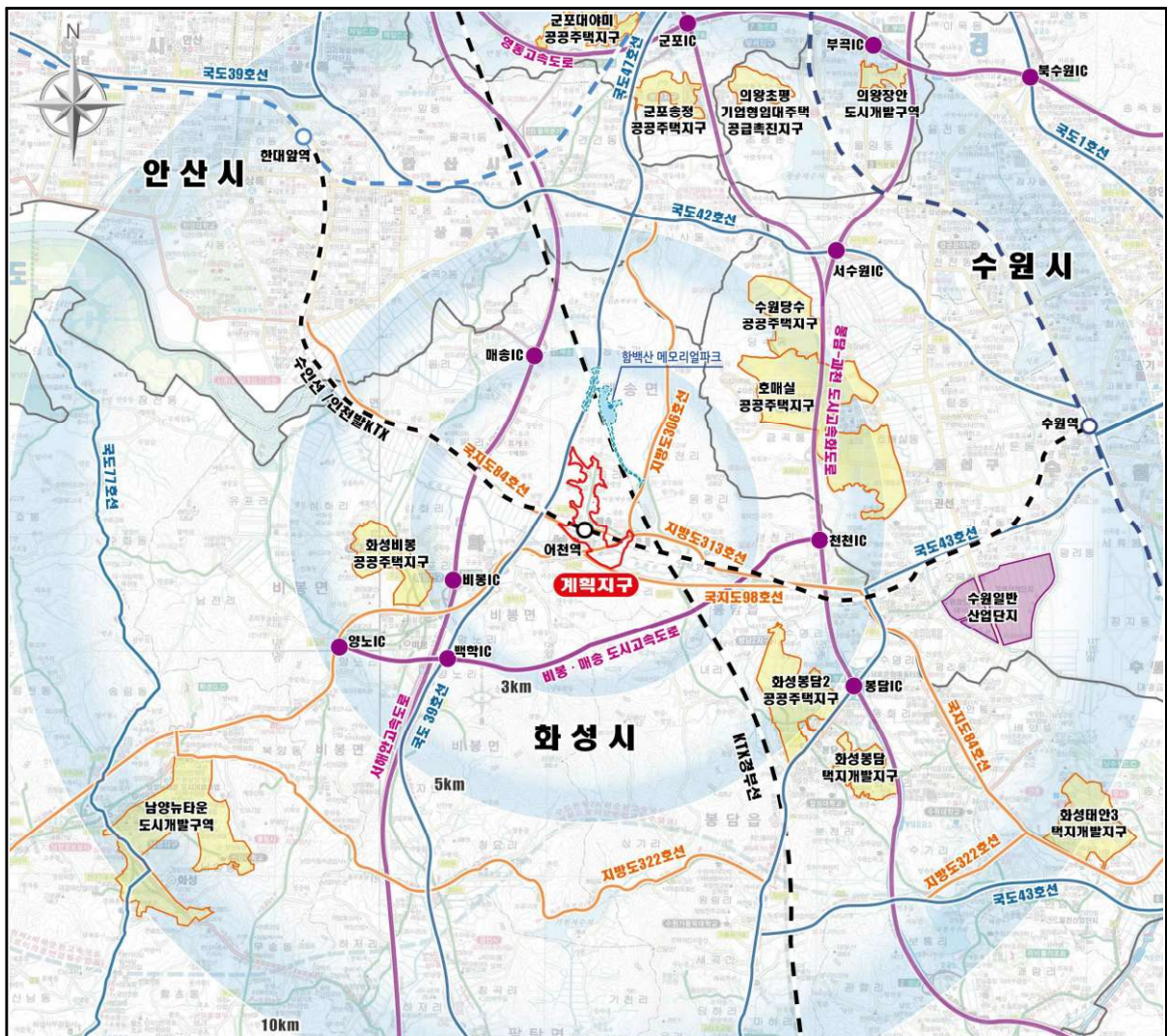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계획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속곡리, 야목리 일원
- 계획면적 : 743,783㎡(개발제한구역 660,341㎡ 포함)
- 계획인구 및 세대 : 8,874인(3,741호)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위치도



3. 주민 등 의견수렴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가.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2018년 8월 6일)
- 일간신문 : 국민일보(2018년 8월 6일)
- 지역신문 : 경기일보(2018년 8월 6일)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8년 8월 6일~2018년 8월 30일(21일간)
- 공람장소 : 화성시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8. 8. 6 ~ 2018. 9. 6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의견 등록

라.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참고 1]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
- 규 모 : 743,783㎡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2018년 8월 30일(목) (21일간)
- 공람장소 : 화성시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8년 9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신문공고

국민일보	경기일보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p> <p>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아륙리 일원 ○ 규모 : 743,783㎡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공람기간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2018년 8월 30일(목) (21일간) ○ 공람장소 : 화성시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p>3. 주민설명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p>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2018년 9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p>5.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p> <p>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8.6 국토교통부장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아륙리 일원 ○ 규모 : 743,783㎡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공람기간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2018년 8월 30일(목) (21일간) ○ 공람장소 : 화성시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p>3. 주민설명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p>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2018년 9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p>5.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합검색

분양가상한제 | 주택도시자금 | 개발공시지가 | 공공분양 | 토지이용
규제

검색길잡이

어린이 청소년마당 ENGLISH

정보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뉴스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책마당
기관소개
전체메뉴

알림마당

공지사항

인사발령

일자리정보

자격시험안내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정부포상

정부정책영상

○ 공지사항 인쇄

제목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서인철 전화번호 044-201-4510 등록일 2018-08-06 조회 176

첨부파일 1 [공고] 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주민공람_및_설명회_공고문(안)_hwp (7094Kbyte) [바로보기](#)

첨부파일 2 [조안요약서] 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2018.08).pdf (6954Kbyte) [바로보기](#)

첨부파일 3 [주민의견_제출서] 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pdf (4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8-9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인쇄하기

검색

시민참여
전자민원
화성시소개
행정정보
문화관광
사회적 공동체
분야별정보
정보공개
전체메뉴 보기

행정정보 공고/고시

☰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고시

> 알림정보

- 시정알림방
- 공고/고시
- 보도자료
- 주간시정
- 도정소식
- 반상회보

> 재정 및 주민참여

> 통계정보

- 인구현황
- 자동차등록현황
- 2010년이전-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
- 2011년 이후 통계 자료실

> 지방규제개혁

제목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		
등록자	기후환경과	등록일자	2018-08-06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국토통고982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hwp
국토통고982-1 [주민의견 제출서]화성어천.pdf
국토통고982-2 [조안요약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pdf

OPEN 공공누리

화성시청의 최신 자료를 제공합니다.
화성시청 자료 저작권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저작권)"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로그인 · 사이트맵 · 도움말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 평가서 초안 공람 ▾**
- 사용자지원 ▾
- .Q&A
- .FAQ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사업명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위치	면적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매송로 49), 속곡리,야목리 일원 일원	면적
		743,783 m ²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구분	도시개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규모 : 743783 m² ● 사업비 : 00 백만원 	

초안공람

초안	화성어천_0000(표지 및 목차).pdf 화성어천_1000(제1장 요약문).pdf 화성어천_2000(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pdf 화성어천_3000(제3장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pdf 화성어천_4000(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화성어천_5000(제5장 지역개발).pdf 화성어천_6000(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화성어천_7000(제7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pdf 화성어천_8000(제8장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및 검토내용).pdf 화성어천_9000(제9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pdf 화성어천_10110(제10장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pdf 화성어천_10120(제10장 지형 및 생태축 보전).pdf 화성어천_10130(제10장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화성어천_10140(제10장 수환경의 보전).pdf 화성어천_10210(제10장 기상).pdf 화성어천_10220(제10장 대기질(악취)).pdf 화성어천_10230(제10장 토양).pdf 화성어천_10240(제10장 소음진동).pdf 화성어천_10300(제10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화성어천_10410(제10장 친환경적 자원순환).pdf 화성어천_10420(제10장 온실가스).pdf 화성어천_10510(제10장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df 화성어천_10520(제10장 임초장해).pdf 화성어천_10530(제10장 인구주거).pdf 화성어천_11000(제11장 종합평가 및 결론).pdf 화성어천_12000(제12장 부록).pdf [초안요약서]_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2018.08).pdf	
초안 공고일	2018.08.06	초안공람기간 2018.08.06 ~ 2018.08.30
공람장소	화성 시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	
설명회장소	매송면사무소 대강당	
설명회일시	2018년8월20일(월) 오후2시	의견제출기간 2018.08.06 ~ 2018.09.06

※ 일반 사용자는 군사사업의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목록

3.2 주민설명회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나. 개최 결과

-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 무산

다. 주민설명회 무산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74호(2018년 8월 23일)
- 신문공고 : 한국일보(2018년 8월 23일) / 경인일보(2018년 8월 23일)
- 정보통신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라. 설명자료 게시 및 비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설명자료 게시) / 매송면사무소(설명자료 비치)

[참고 4] 신문공고 (설명회 생략)

한국일보	경인일보
<p>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074호</p> <h2 style="text-align: center;">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h2> <h3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h3>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2018.8.6.)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8월 23일</p> <h3 style="text-align: center;">국 토 교 통 부 장 관</h3>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획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아천리, 속곡리, 아득리 일원 ○ 계획규모 : 743,783㎡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p>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p>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재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074호</p> <h2 style="text-align: center;">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h2> <h3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h3>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2018.8.6.)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8월 23일</p> <h3 style="text-align: center;">국 토 교 통 부 장 관</h3>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획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아천리, 속곡리, 아득리 일원 • 계획규모 : 743,783㎡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p>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p>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매송면사무소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재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5] 정보통신망 (설명회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보다나온 정부**

분양가상한제 | 콜버스 | 아파트 | 행복주택 | 공공분양

검색결과 0

어린이 청소년마당 | ENGLISH

정보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뉴스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책마당
기관소개
전체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알리정보
- 자격시험안내
- 입찰안내
- 사전규격공고
- 정부포상
- 정부정책영상

○ 공지사항
인쇄

제목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서연철 전화번호 044-201-4510 등록일 2018-08-23 조회 31

첨부파일 1 [화성어천]설명회_생략_공고문.hwp (14Kbyte) Q 바로가기

공고 제2018-10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074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2018.8.6.)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 토 교통 부 장 관

회원조절가능

가* 가* 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청암엔지니어링(주) 님로그아웃

개인정보수정 · 사이트맵 · 도움말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용자지원

· Q&A

· FAQ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사업명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소재지	면적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마천리 (매송로 43), 옥곡리, 아목리 일원 일원	743,783㎡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구분	도시개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규모 : 743783㎡ · 사업비 : 00 백만원 	

■ 주민의견 수렴 결과

게시기간	2018.08.23~2018.08.30	
내용	주민설명회 무산	
자료	[화성어천]설명회_생략_공고문.pdf 화성어천_주민설명회자료_웹게시.pdf	

3.3 공청회

가.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66호(2018년 9월 12일)
- 일간신문 : 경향신문(2018년 9월 12일)
- 지역신문 : 중부일보(2018년 9월 12일)

나.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화성시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다. 공청회 개최 결과

- 참석인원 : 약 130여명 (정상개최) - 공청회 참석자 명단은 주민측 작성 거부

[참고 6] 공청회 개최 현황



[참고 기 공고문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66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
- 계획규모: 743,783㎡
-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2시
- 장 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으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8] 신문공고 (공청회 개최)

경향신문	중부일보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66호</p> <p>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년 9월 12일</p> <p>국 토 교 통 부 장 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속곡리, 야목리 일원 ○ 계획규모 : 743,783㎡ ○ 시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공청회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p>3.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으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 (☎055-922-37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66호</p> <p>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 9. 12.</p> <p>국 토 교 통 부 장 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속곡리, 야목리 일원 ○ 계획규모 : 743,783㎡ ○ 시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공청회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대강당(매송로 43) <p>3.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으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9] 정보통신망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Ministry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public notice titled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Public Notice of Public Hearing for the Hwaseong-echeon Public Housing Projec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Draft)).

국토교통부 | **보내온 정보** | 통합검색 | 검색결과 | 어린이 청소년마당 | ENGLISH

분양가상한제 | 주택도시금융 | 콜버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보공개 | 국민마당 | 국토교통뉴스 | 알림마당 | 정보마당 | 정책마당 | 기관소개 | ≡ 전체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일자리정보 | 자격시험안내 | 입찰안내 | 사전규격공고 | 정부포상 | 정부정책영상

제목: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 홍승표 | 전화번호: 044-201-4534 | 등록일: 2018-09-12 | 조회: 28

첨부파일 1: 의견진술자_추천서(서식)(2).hwp (20Kbyte) | 첨부파일 2: 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공청회_공고문.hwp (20Kbyte)

공고 제2018-11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66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시 홈페이지

Q

분야별정보
정보공개
시민참여
전자민원
행정정보
화성시소개

행정정보

알림정보

- 시청알림방
- **공고/고시**
- 주간시정
- 도청소식
- 반성회보

재정 및 주민참여

통계정보

규제개혁

공고/고시

[원래 페이지 주소 복사](#) | [새창으로 프린트](#)

제목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개최 공고(매송면 어천리 및 속곡리 및 야무리 일원)		
담당부서	시민소통관	등록일시	2018-09-12 10:13:35
<p>화성시 공고 제2018-3289호</p> <p>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년 9월 12일</p> <p>화성시 장</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명: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속곡리, 야무리 일원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초회 및 정보입력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용자지원

.Q&A

.FAQ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사업명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면적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매송로 43), 속곡리, 야무리 일원 일원		743,783㎡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p>[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p>		
사업구분	도시개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규모 : 743783㎡ • 사업비 : 00 백만원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계시기간	2018.09.12~2018.10.04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pdf 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공청회_공고문.pdf

※ 일반 사용자는 군사사업의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서○○ 외 2인	○ 수용지역 선정에 의혹이 많다고 하니 불공평하지 않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진행바람	○ 수용지역 선정은 관련 지침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음	-
정○○ 외 14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주 동의 없는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주민 자체 개발을 원함	○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계획임	-
홍○○ 외 16명	○ 공공이란 이름으로 헐값 보상하고 개발이익 왕창 가져가는 수용 방식은 옳지 않으니 서로 상생하는 환지방식을 원함	○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계획으로 환지가 가능한 사업이 아님	-
박○○ 외 13인	○ 개발제한구역으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며,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데 왜 개발을 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지 이해가 안 됨	○ 계획지구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겠음	-
이○○ 외 3인	○ 계획지구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맹꽁이, 수리부엉이, 능구렁이 등이 모두 빠져있으며 너무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평가서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식물상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
최○○ 55명	○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반대하며 삶터를 옮겨야 하는 토지주들의 생존권과 사익 침해가 큼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및 이주대책 등을 적법하게 이행할 것임	-
이○○	○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잣대로 확정된 계획은 인정할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계속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문○○ 17명	○ 농지는 한번 없어지면 조성하기 어려우니 경지정리가 잘된 절대 농지 수용 반대	○ 계획지구 편입 농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
이○○	○ 공공주택지구는 놓고 있는 임야나 개발을 안했던 곳과 주민들의 생활권 등에 침해가 안 되는 곳으로 선정하고 역사 근처에 있는 토지는 역세권 개발과 민자개발을 도입시켜야 함	○ 주택수요 예측결과와 어천역 신설에 따라 현재 입지에 공공주택지구를 계획하였으며, 역사 인근에는 상업·복합용지 등을 배치함	-
오○○ 외 5명	○ 주민동의 없는 일반적인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며 시세와 맞지 않는 수용보상금으로 사업진행은 안되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할 계획임	-
최○○	○ 화성시에도 빈 아파트가 문제임	○ 주택수요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였음	-
강○○ 외 1인	○ 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반영
최○○	○ 화장장을 유치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고 해서 혐오시설까지 허용했는데 공공주택지구 불가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사업자는 화성시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임	-
주민 대책위원회	○ 어천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인근으로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주택사업의 수용 세대가 30,000세대 이상인 점으로 보아 매송면 어천리, 속곡리 및 야목리 인근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이유가 없음	○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전문기관의 주택수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계속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 대책위원회	○ 어천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북측으로 계획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화장장)”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어천공공주택지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평가서에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주택분양시 화장시설의 입지를 사전 공지할 계획임	-
"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예정부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맹꽂이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어천공공주택지구 예정지도 맹꽂이의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수리부엉이, 능구렁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개발제한구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는 안 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헌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였음 맹꽂이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부지에서 청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계획지구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맹꽂이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의 서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추가조사를 통해 서식이 확인될 경우 보호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	○ 화성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주택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의 65%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미분양 물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경기권의 택지공급사업은 대부분 외곽에 편중되어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20%에 불과한데 현재에도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화성시 미분양은 동탄2지구와 송산그린시티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어천 역세권 인근의 높은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서 주택수요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였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계속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 대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게 되면, 국·공유지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 지정 제안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거쳐 공익사업의 시행 유무를 판단해야 함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전체 토지소유자의 90%이상으로 향후 보상협의 과정에서 민원(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을 위한 단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권이 부여된 상태가 아니고, 향후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수용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과정의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천공공주택지구는 총 3개 대안의 입지 검토를 하였는데 기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의 도면에 가장 가까운 대안3을 선정하지 않고 대안1을 선정하였음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대안3을 선정하지 않은 사유로 '양호한 건축물의 철거', '기존 주민의 이주 등 문제 발생' 등을 들고 있는데 실제 해당 시가지는 노후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는 선정된 대안1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편입 토지 소유자와 편입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어천지구 주민을 위해 해당 사업 자체의 백지화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이며 공공주택사업의 지구계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음 ○ 대안3에 포함된 시가지는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와 중복 개발 배제를 위해 제척하였음 ○ 사유지 보상과 이주대책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 	-

■ 공청회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p>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p>	<p>○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90%가 자연환경에 관계되는 것인데 허가를 하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p>	<p>[공청회 당일 답변] ○환경부가 환경측면의 최종 허가(협의)를 하나 그 시점은 초안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이 끝나고 본안이 제출되어 협의 요청한 이후가 되며 본안에 대해 전문자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협의 여부가 결정됨</p> <p>[추가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는 관계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되며 협의권자인 환경부의 참석할 법적 의무는 없음</p>	<p>-</p>
<p>"</p>	<p>○관계법을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최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의 장이 안 나와 있으면 공청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p>	<p>[공청회 당일 답변] ○주민 여러분들이 오늘 공청회가 그런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시면 의견을 접수해서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며 국토부, 환경부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p> <p>[추가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그 상세한 역할을 정하고 있음</p> <p>○ 따라서 관련 조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고, 의견진술자를 추천받아 최종 결정하였으며, 사업자측 의견진술자로 배석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담당 사무관이 공청회 당일 참석하여 주민측 의견진술자의 진술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였음</p>	<p>-</p>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이 금지돼 있는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돼 있음. 이것은 법률에서 LH공사에 면책조항을 준 것이며, 맹꽂이가 폐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은 필수조항인지 선택조항인지 답변 바람</p>	<p>[공청회 당일 답변]</p> <p>○ 계획지구의 동식물상 조사결과에 따라 이주 및 보전방안을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해 제안하고 환경부가 최종 판단함</p>	-
"	<p>○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위원 9명 중 저희 주민대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저희가 아는 주민대표가 안 들어가 있으므로 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효임</p>	<p>[공청회 당일 답변]</p> <p>○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시로 시민단체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화성시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해당 위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심의를 이행하였음</p> <p>○ 주민대표가 빠졌다면 법적인 구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며, 환경부에서 초안 검토 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런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임</p> <p>[추가 검토]</p> <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정된 협의회위원은 화성시 거주 주민임</p>	-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너무 졸속 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임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작성하였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결정내용을 7월 10일부터 23일까 지 국토부 홈페이지하고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만 공개하고 화성시청이나 매송면사무소는 배제 한 상태로 주민의견을 받았으며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주민의견 이 없다고 했는데 의견서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의견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서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됨	[공청회 당일 답변] ○평가항목에 대한 결정내용 공개 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지역 관 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대 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홈페이 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 스템(EIASS)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주민 여러분의 접근이 어렵다 는 점은 향후 보완돼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됨	-
"	○어천지역에는 대학도, 산업단지도, 청년도 없는데 지구 전체에 대학 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수요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됨 어천역세권이면 역을 위한 개발을 하고 필요한 공공주택은 기 개발 된 주변의 다른 택지지구에 나눠 서 짓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농 민 땅을 강제수용해서 미분양에 남아도는 공공택지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설득이 안 되는 행태임	[공청회 당일 답변] ○정부 주거정책상 저렴한 서민주 택을 공급하기 위해 굉장히 노 력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고 장래에도 주거지역으로서는 역 세권이나 교통결절점이 아니면 형성되지 않을 그런 추세로 가 고 있음. 역이 신설되면 주변에 비싼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들이 차근차근 형태를 맞춰 오 는 것까지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제안한 사항임	-
"	○KTX역을 경기도에서 공공택지지 구로 지정한 곳이 있는지 답변바람 수원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이용할 지역에 50m 안에 행복주택을 짓 는 것이 말이 안됨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주거지보 다는 상업지역이 타당함	[공청회 당일 답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추가 검토] ○KTX광명역 인근에 광명역세권 지구 택지개발사업(상업용지 비율 17.6%)이 시행 중이며, 경기도는 아니나 서울 수서역(SRT)에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사업,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KTX) 인근에 광주선운2 공공주택사업이 예정돼 있음	-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수용하천인 숙곡천으로 방류되며 숙곡천은 건천인데 화장장 물을 하루에 250톤씩 흘려보낼 경우 숙곡천이 친환경적인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따른 숙곡천 수질 예측을 해당 평가서의 내용을 보고 썼다면 정확히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p>[공청회 당일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바, 해당 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하류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흘려보내도록 협의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p>[추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에 따르면 시설용량 50m³ 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BOD기준 10mg/L이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질 BOD 8mg/L로 계획되어 있음 ○ 숙곡천 유량은 2,583.36m³/일, 오수처리수 유량은 191.794m³/일로서 오수처리수 유입 후의 BOD 가중농도는 0.2mg/L로 검토된 바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10-191에 바람이 계속 북쪽으로 분다고 되어 있는데 봄여름가을겨울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분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초안 10-191페이지는 풍향별 최대풍속 및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할 기상대인 수원기상대의 2017년 풍속, 풍향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바람장미도이며 해당 페이지에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내용은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지구에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가시권 분석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산 뒤쪽의 공공주택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p>[공청회 당일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권 분석은 지형의 높이만을 고려한 예측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인접지점에 대해 개략예측을 시행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고별 예측을 시행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에 지점을 추가하여 가시권 분석을 수행하겠음 	반영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주택보증공사가 화성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도의 빈집이 계속 늘고 있으며,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에도 녹색도시 실현방안에 기존 주거지를 개량·정비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공공주택(아파트)의 수요가 있다는 예측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바람 서울의 주택수요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화성어천지구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건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	[공청회 당일 답변] ○화성시 동부권에 갑자기 많은 물량이 나와서 그런 것으로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획지구가 속한 서부지역은 서부지역의 특징이 있고, 본 어천지구는 어천역 신설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추가 검토] ○화성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송산그린시티 등)의 분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분양증가 및 해소현상이 발생하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해제, 재지정되고 있음	-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속곡리는 산과 산사이의 거리가 200~300m 밖에 안 됨. 자연환경과 조화되려면 산보다 훨씬 높아서는 안 될텐데 아파트 몇 층짜리를 지으려고 하는지 답변 바람	[공청회 당일 답변] ○경관심이나 경관계획을 통해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배치를 할 계획이며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음 [추가 검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으로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경관 영향검토를 통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	○메모리얼파크하고 공동주택지 사이에 녹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 만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람	[공청회 당일 답변]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배치를 결정할 사항이며,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
"	○수원 금곡동과 호매실동 주민들이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혐오시설이라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500m 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경기도의 대표적인 화장시설인 수원 연화장 인근에도 광고신도시가 조성돼 있으며, 「화장시설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2015.5,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p>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p>	<p>○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문헌조사의 경우 2009년도에 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참조했는데 매송지역은 없고 고잔, 군포, 남양, 발안이 있음. 그리고 월평리에 있는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8월에 조사된 문건인데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p> <p>○또한, 현지조사 시 4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조사시기는 4, 5, 6월이고 7~9월 가장 왕성한 시기에 조사되지 않았다면 신뢰성 확보가 안 되니 내년 5~6월 맹꽁이 활동 시기에 주민 참관조사가 필요함</p>	<p>[공청회 당일 답변]</p> <p>○조사는 조사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조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면서도 추가 조사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이루어질 환경영향평가 때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p> <p>○전국자연환경조사는 매년 시행되는 조사가 아니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가 2015년도에 한 4차 조사인데 그 당시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위주로만 조사를 시행하였고 모든 동·식물상을 조사한 건 2009년 3차 조사임. 본 사업지구는 2만5천도 지형도 도엽으로는 고잔, 군포, 남양, 발안 도엽에 해당하므로 4개 지역을 조사하였음</p> <p>[추가 검토]</p> <p>○계획지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 발생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인근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한 최근 10년 이내의 문헌을 모두 참조하였고,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자연생태 변화 파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국자연환경조사는 2009년의 3차 조사가 가장 최근에 시행된 조사임</p> <p>○계획지구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음</p>	<p>-</p>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p>○동식물상 조사인원이 2명인데 충분한지 묻고 싶고, 조사경로를 보면 도로를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산지 끝부분은 도로에서 최소 50~100m 떨어져 있음. 4차에 걸쳐 동일하게 같은 경로로 이동한 건지, 4번을 구간별로 나눠서 한건지 현지조사가 부실하고 졸속조사이므로 조사시기나 조사범위 조사자 수를 늘려 새로이 현지조사를 해주시기 바람</p>	<p>[공청회 당일 답변]</p> <p>○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가는 시기가 동식물상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맞으며, 4차까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든 것이 평가서 초안이므로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조사가 시행될 수 있음</p> <p>[추가 검토]</p> <p>○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지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임</p>	-
"	<p>○식물조사표에 산도라지, 할미꽃, 고비, 나리꽃 등이 빠져있고 수령이 500년이 넘는 엄나무 군락, 200년이 넘는 뽕나무 군락도 빠져 있음</p> <p>○육상곤충도 2번에 걸쳐 3시간을 조사했는데 말이 안 되고 곤충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6~8월에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딱정벌레, 반딧불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음</p> <p>○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일 보고 사는 금개구리, 도롱뇽이 보호종인데도 다 빠져있고, 황조롱이 뿐만 아니라 소쩍새, 수리부엉이, 제비도 빠져 있으니 재조사를 요구함</p>	<p>○현지조사의 한계상 모든 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식 가능한 종을 문헌 및 탐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음</p> <p>○주민 탐문을 거쳐 엄나무와 뽕나무 노거수 위치를 확인하고 평가서에 수고, 흉고둘레, 현황사진 등을 기재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영향 여부와 저감방안을 검토하겠음</p> <p>○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도롱뇽, 소쩍새, 수리부엉이는 현지조사 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추가조사를 통해 서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p>	반영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사업지구의 지구계 결정은 주변여 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라고 되 어 있는데 액션 3개와 노액션 비 교 시 노액션이 훨씬 좋은 안이라 고 생각됨	○노액션은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어천 역 신설에 따른 개발압력을 수 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 고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대 안으로 선정하였음	-
"	○지구계 결정시 남측 지방도 98호 선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98호선과 가장 멀리 떨어지게 대안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공청회 당일 답변] ○지구계 남쪽은 지방도 98호선, 어천역세권으로 개발압력이 굉장 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으로 주변 농경지와는 단절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를 사업지구로 해서 구상하였음 [추가 검토] ○계획지구 지구계 중 남측 경계 설정 시 고려한 요인이 국지도 98호선이라는 의미임	-
"	○토지이용 정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똑바로 그리는 것이 정형 화이지 지금 선정된 안은 부정형 화라고 생각됨	[공청회 당일 답변] ○지구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제척하는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이라던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지자체에 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지 로서 중복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빠진 것임 ○정형화는 네모형태로 하면 지구 계 설정 근거가 아주 애매해지 며,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명확하게 어떤 용도지역이라던지 이런 경 계를 가지고 해야지 형평성 같 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런 것들이 최대한 고려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 평가항목 심의결과 녹지축, 생태계, 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전, 답, 임야가 77.3%이며 개발제한구역이 88.8%인 대상지에서 심의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척하지 않고, 주거지역을 제척한 것은 심의내용을 거꾸로 해석하신 것인지 답변 바람	[공청회 당일 답변] ○ 어천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5등급이 대부분 북쪽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이며 농경지 등급도 굉장히 낮음.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인 남쪽지역이 개발제한구역 1~2등급인데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규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되면 농업적성지 1~2등급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 지구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제척하는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라던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지로서 중복해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빠진 것임	-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기타 요구사항	○ 평가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돼 있는데 주민대표 참여 없이 이루어진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내용 포함 모든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함	○ 화성시로부터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해당 위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심의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정된 협의회위원은 화성시 거주 주민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함	-
"	○ 평가서 초안의 모든 내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 부실한 현지조사 등 최소한의 것도 다루어지지 않은 졸속적 문서작성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문서 자체도 허구라는 사실을 주장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고 화성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및 기타 관계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공신력이 보장되며 부실하게 작성될 수 없음	-

■ 공청회 - 계속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측 (주민대책 위원회) 기타 요구사항	○따라서 이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어 천 공공주택지구 주민 및 토지주 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함 ○아울러 보다 더 준비된 자료와 성 실한 공청회를 위해 2차 공청회를 요청함	○본 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시행 여부는 관계법에 따라 결정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1차 공청회가 개최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공청회의 재개최 (2차 공청회)는 불가함	-
질의응답 : 주민1	○구역계 조정이나 환지가 가능한지 답변 바람	[공청회 당일 답변] ○공공주택사업은 환지가 가능하지 않음	-
질의응답 : 주민2	○맹꽁이를 비롯해, 파충류, 살모사, 능구렁이가 숙곡리에 많이 서식하 고 황조롱이, 황새, 청둥오리, 기러 기가 동화천에 많이 서식하고 이동 도 함. 집 앞에 수시로 황새, 청둥 오리가 내려와서 먹이를 채취하는 데 생태조사를 다시 해주기 바람	○공청회 이후 질의한 주민에게 탐문조사를 시행하였고, 탐문조사 결과를 평가서 본안에 반영하였 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해당 종은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서식 및 서식가능성을 확 인한 종이며, 황새는 멸종위기야 생생물 I 급으로서 충남, 전남 등 전국 습지에 매우 적은 수가 규칙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계획 지구 일대에서의 서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반영
질의응답 : 주민3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 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역 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지 숙 곡리 산골로 올라가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해가 안 됨	○본 계획은 어천역 신설 및 주택 수요 예측에 따른 것으로 어천 역세권 일대의 개발가능지를 검 토했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개 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질의응답 : 주민4	○북측에 사는 주민인데 저는 찬성 편이며 어떤 지구는 제외해 달라, 어떤 지구는 제외하지 말라 그러 는데 그건 이권 관계를 따진 것이 니 원안 그대로 해주시기 바람 같은 동네에서 주민 갈등만 초래 하게 된다고 생각함	○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지구계획 수립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